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98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988호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	60
고양시 조례 제2989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고양시 조례 제2990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고양시 조례 제2991호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69

훈 령

고양시 훈령 제444호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훈령	74
-----------------	----------------------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6-48호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외 2개 노선)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77
고양시 고시 제2026-54호	도로명주소 고시	84

공 고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127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86
--------------------------	---------------	----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2월 13일

고양시 조례 제298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장”을 “고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
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③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 중 “시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에서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표 2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명 제1호 근거법규란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로 한다.

별표 2 [노인복지과] 위임사무명 제2호 단위사무명 제3호의 근거법규란 중 “「고양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2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명 제1호 단위사무명 제5호란 중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안자	정책관 성명	기획정책관 김복희
	팀장 성명	조직제안팀장 송대호
	담당자 성명·전화	윤승희 (031-8075-2395)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도시디자인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관련 허가·신고 및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공공 목적 광고물을 포함한다)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취소 6.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변경,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에 대한 관리 및 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 제29조 · 같은 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5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 같은 법 제10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5조

[감사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속 공무원의 주의요구(경고 · 훈계·주의) 처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양시 감사 규칙」 제21조

[시민안전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민방위대 운용에 관한 동장 지휘·감독 권한 2.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 3.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결과 보고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 민방위대 지휘 감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관내 직장민방위 대장의 감독 2.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 및 결과 보고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1. 직장민방위 대원의 교육 통지서작성 및 전달 2. 직장민방위 대원 및 기술 지원대의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교육 불참자 조치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 영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4.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1. 민방위대 신고의무 및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재난대응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2.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그 밖의 질서유지 3.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2.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1.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 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구청 정보화 교육 수강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사무	1. 수강료의 부과 및 징수 2. 수강료의 감면 3. 수강료의 반환	•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의2 • 같은 조례 제15조의2 • 같은 조례 제15조의3

[행정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계획 및 허가 2. 병가 및 공가 허가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2. 청원경찰 배치	1. 청원경찰 근무부서 배치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3. 기록물관리 전산화	1.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인적자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징계(다만, 구간 전보,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제외)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다만, 구간 전보 및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제외) 3.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개방형 직위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같은 법 제6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 같은 영 제1조의4

[주민자치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율방범대 경비 등의 지원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민원여권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2. 행정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행정사 업무(변경) 신고	· 「행정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행정사업의(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3.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 신고	·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4. 행정사업의 지도·감독	·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5.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8조

[일자리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현황 보고 5.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및 보고 6.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과태료 부과·징수	· 「직업안정법」 제19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같은 법 제50조

[소상공인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담배 소매인의 지정 2. 담배 소매인의 지정 취소 3.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4. 담배 소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 「담배사업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방문판매·전화 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고, 변경, 휴업·폐업 등) 2.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3. 직권말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48조, 제66조 • 같은 법 제12조
3. 통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통신판매신고 (신고, 변경, 휴업·폐업 등) 2. 직권 말소 3. 조사 및 감독 4.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31조, 제45조

[세정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2. 개별주택가격 검증 3. 주택소유자 등의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4.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재조사 및 가격 산정 5.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장제, 해산) 지급 3. 보장비용의 징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 같은 법 제46조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후관리 2. 의료급여증 발급 및 변경, 재발급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불 및 대지급금 상환·독촉 4.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현금급여 지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의료급여법」 제23조 •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 실시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8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 같은 법 제9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5.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자활) 보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자활) 지급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여성가족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한부모가족 조사보고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3.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노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건강진단 실시 2. 경로사업(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지원 등)의 실시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변경·휴지·폐지 신고 및 사업정지 등 명령 (노인복지관 업무 제외) 4. 기초연금(미지급연금 포함)지급 및 부당이득 환수(승인, 결정 사항 제외) 5. 효수당 지급 및 변경, 부당이득 환수	· 「노인복지법」 제27조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제37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3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례식장영업의 신고(변경, 폐업), 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 유지·관리 2. 장례식장영업에 대한 정비,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권한 3. 장례식장 행정 처분에 관한 권한 4.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4 ·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2. 노인의료복지시설 감독 3.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2. 재가노인복지시설 감독 3.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및 갱신 2.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3.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 4. 청문 5.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처분 6. 과태료 7. 과징금 8.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37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변경·폐지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감독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장애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장애인 보호관리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급여(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 장애 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지급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체납처분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같은 법 제6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보육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아동 등에 대한 조사 2.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3. 가정위탁아동 지원 4. 보조금의 반환명령 5. 아동수당에 관한 조사, 질문, 지급, 정지, 환수, 과태료 부과·징수, 고발 등	· 「아동복지법」 제66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아동복지법」 제59조 · 「아동복지법」 제61조 · 「아동수당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6조
2.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사항 (설치·변경인가 등) -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등 - 어린이집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어린이집 지도와 명령 - 어린이집 보고와 검사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등 신고 - 어린이집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어린이집의 폐쇄 등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2.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같은 법 제34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보육료 자격 책정 및 관리 - 가정양육수당 자격 책정 및 관리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1. 아동급식협력업체 지정 및 관리 2. 급식비 지원 및 정산 3. 급식업체(지역아동센터 포함) 지도점검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아동복지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6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환경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양환경보전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3. 손실보상 4.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5. 토양오염검사의 통보 등 6. 토지이용 등의 제한 7. 행위제한(토양오염 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명령) 8. 명령 불이행자의 대집행 9. 과태료 부과·징수	•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제3항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2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사항 2. 과태료 부과·징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 • 같은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기후에너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2.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3.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4.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5.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6.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권고 및 개선권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명령 7.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악취방지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30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활소음·진동 관련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 2. 폭약사용의 필요사항에 따른 조치명령 3. 교통소음 및 진동규제 지역 내의 자동차 운행 규제 요청 4.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내의 방음시설 설치 요청 5. 운행차의 수시점검, 면제, 원인의 소명 6. 운행차의 개선 및 사용정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명령·통행규제 7. 과태료 부과·징수 8. 특정공사 사전 신고 9.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1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수리 2.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4조, 제25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6.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자원순환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관리 및 공급 (공공용쓰레기규격봉투에 한정한다) 2.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3. 폐기물 불법행위 적발 및 처리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업무 5.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6.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수리 7. 생활폐기물의 처리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한정한다)	•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8조 • 같은 조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같은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5조의2 • 같은 법 제14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 시설이나 용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 5.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6. 보고 및 검사 등 7. 재활용 위반행위 적발 및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제9조제3항 • 같은 법 제12조의3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의2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9조부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처리 1.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공중화장실 제외) 2. 개방화장실 지정 3. 보조금 지급 4. 보고 등	제41조까지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9조

[식품안전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1. 영업허가 신청 2.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 그 밖의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은 제외)	1. 영업신고 2. 변경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같은 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같은 법 제88조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4.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5. 행정처분, 청문, 과징금, 과태료 등 1. 식품위생영업소 지도·단속(정기 및 수시의 출입·검사·수거 등) 2.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폐기처분, 공표, 개수명령,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청문 등) 3. 과징금·과태료 처분 4. 부정·불량 식품의 지도·단속 5. 무허가·신고 식품영업(퇴폐, 변태 등)행위의 단속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 「식품위생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 같은 법 제101조, 제102조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제79조
5. 그 밖에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추진업무	1.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 관련 업무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86조, 제8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6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3조
6.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 같은 법 제3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7. 공중위생영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위생영업소 지도·단속 (보고 및 출입·검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2.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6
	3. 벌칙 4. 과태료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9.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이용시설의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0.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2. 위생관리등급 공표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신고 2.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지도·단속(출입·검사·수거 등)	·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1. 시정명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5.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폐기처분 등 3.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4. 품목 등 제조정지 5. 폐쇄조치 등 6. 과징금 처분 7. 위반사실 공표 8. 벌칙 9. 과태료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해촉 등 관리 1. 유통 가공식품 및 식품위생업소(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외)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지도·단속 2. 부당한 표시행위 및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처분, 영업정지 등, 청문) 3. 과징금·과태료 처분 4. 벌칙 5. 위반사실 공표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제31조 ·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같은 법 제21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6. 개식용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운영신고 2. 실태조사 3. 이행조치명령 4. 과태료 5. 벌칙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7조

[문화예술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연장업의 등록(변경) 및 등록증의 재교부 2. 재해예방조치 3.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4. 공연장 등에 관한 지도·감독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폐기명령, 행정처분, 폐쇄조치, 증표휴대, 청문) 5. 벌칙(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2. 출판사 및 인쇄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2. 폐업 및 직권말소 3.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제3호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화업자 신고, 변경신고 2.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3.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 4. 영화상영의 신고, 변경신고 5. 영화상영의 제한 6.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7. 영화상영관 영업 등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같은 법 제26조제3항 · 같은 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제41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승계신고	
	8.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변경신고·변경등록	·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9.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63조
	10.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64조
	11.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영업소 폐쇄 및 비디오물 수거 등 조치	· 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지원	· 같은 법 제88조, 제89조
	13. 수수료 책정	· 같은 법 제90조
	1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및 지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변경등록	· 같은 법 제25조
	3.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등록, 신고,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6조
	4.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의 지위 승계신고.	· 같은 법 제29조
	5.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업	· 같은 법 제3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직권말소	
	6.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 같은 법 제31조
	7.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 폐쇄 등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청문)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
	8.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쇄 및 수거 등 조치	· 같은 법 제38조
	9.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8조
	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3.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같은 법 제18조
	4. 신고증·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20조
	5.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21조
	6.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4조
	7. 등록취소, 청문	· 같은 법 제27조, 제30조
	8.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같은 법 제29조
	10. 수수료 책정	· 같은 법 제31조
	11.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

[관광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유원시설업	1. 테마파크업 허가신청 2.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그 밖의 테마파크업 영업신고 4. 그 밖의 테마파크업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5. 벌칙 6. 양벌규정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 같은 법 제5조제3항 • 같은 법 제5조제4항 • 같은 법 제5조제4항 •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 같은 법 제85조

[체육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2.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3. 회원의 모집 및 보호 4. 시정명령 5. 행정처분 6. 청문 7.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8. 수수료 징수 9. 과태료 부과·징수 10. 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도시계획정책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지구단위계획구역 위반 건축물, 공작물 단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41조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 단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
	2.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고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제30조의2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주택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 제외) 3. 관리비 및 회계운영 4. 시설 관리(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업무,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제외) 5.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6.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업무 제외) 8. 벌칙 및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 같은 법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 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2.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건축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발제한구역은 제외)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허가, 사용승인 (다만, 증축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 위반 건축물 및 대수선할 때의 조치(다만, 건축물의 냉방설비, 조경 유지관리 및 처분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다) 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 3. 무단용도 변경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단속 4. 예방단속 및 행정처분	• 「건축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2. 기존 건축물 공부의 건축물 대장 이기 3. 건축물대장 발급 4. 등기촉탁	• 「건축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제39조 • 「건축법」 제11조
4.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1.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5.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2.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업무 3. 용벽 등 공작물 축조 관련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 같은 법 제83조
6. 주상복합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1.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 · 관리 행정지도 2. 건축물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3.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 완료신고 및 멸실 4.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 같은 법 제9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5.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계획 및 지원·관리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2
	6. 빈 건축물 정비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행정조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40조, 제41조
8.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집합건물 관리 및 행정조치 (관리인선임, 회계감사, 분쟁조정,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의2, 제65조 및 제66조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2.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토지정보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2.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선매자 지정 및 통지 3.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4. 신고포상금 지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2. 국가 등의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특례	1.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과태료	1. 토지 등의 거래에 관한 과태료 처분 및 징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과징금 부과 및 징수 2. 이행강제금 부과 3. 위반사실 확인조사 4.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5. 과징금 물납신청의 허가여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5.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2. 개별공시지가 검증 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4.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 및 산정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교통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교통유발 부담금부과·징 수사무에 관한 권한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및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 2.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 정비업, 매매업,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 폐차업 등에 관한 사항 3.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4.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5.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 같은 법 제55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
3. 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의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이륜차 동차 포함) · 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 차량 지 도·단속 · 등록번호판 훼손차량 지도·단속 · 등록번호판 봉인의 멸실·훼손 지도·단속 · 등록증 미비차량 지도·단속 · 그 밖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불법 부착물 지도·단속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자동차관리법」 제4조, 제84조

[주차교통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차·정차 지도·단속 및 관련 업무	1. 주차·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2. 전인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 3. 그 밖에 주차·정차 지도에 관한 업무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5조, 제161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47조
2. 전용차로 지도·단속	1. 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3.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건축협의) 2.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주차장법」 제6조, 제19조 · 같은 법 제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4.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2.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처리 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변경 등 신고 및 관리 5. 기계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19조의8 · 같은 법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 같은 법 제19조의13 · 같은 법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도로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의 점용허가	1. 도로점용허가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변경 허가 3. 진출입로의 연결허가 4.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도로법」 제61조 · 같은 법 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62조
2.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원상회복 2. 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제73조 · 같은 법 제66조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했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하는 권한	1.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2.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도로법」 제63조 · 같은 법 제96조
4.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1.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 「도로법」 제97조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법정도로의 응급복구 2.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3. 도로 소파보수 4.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법」 제31조
6. 시유지 관리	1. 시유지 재산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7.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1. 노상적치물 정비 2. 과태료의 부과 징수	· 「도로법」 제61조, 제75조 · 같은 법 제117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다음의 권한	3. 변상금의 징수 4. 원상회복 5. 행정대집행 6. 이행강제금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100조
8.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허가(공동구를 제외한 도로부속물에 한정한다) 2.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공익을 위한 처분 3. 청문의 실시	• 「도로법」 제36조 • 같은 법 제96조, 제97조 • 같은 법 제101조
9. 사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도 개설허가 2. 사도 개설허가의 취소 3. 처분 및 조치	• 「사도법」 제4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10. 도로 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1. 도로 구조의 보존 및 도로표지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5조
11.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유지·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개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불법행위 단속(개발제한구역 제외)	1.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 연면적의 2천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3. 공작물의 설치 4. 토지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녹지·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불법 개발행위 단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같은 법 제133조

[농업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전용신고 2. 농지전용 변경신고 3. 전용허가의 사후관리 및 불법 전용농지 단속 4. 농지전용신고의 취소 5. 농지전용신고의 용도변경 승인 6. 농지(신고)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및 변경신고	· 「농지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제42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36조
2.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 처분의 의무 통보 및 부과 2. 농지 처분명령 및 매수 청구 3.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5. 농지임대차 관리 6.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사후관리	· 「농지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41조의3, 제42조
3.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	1. 작성 및 비치 (구 농지원부 포함) 2. 교부 및 열람 3.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녹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원·녹지 관리 (미조성 도시공원·녹지 포함) 2.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3. 점용료의 징수 4.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5.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6.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 같은 법 제24조, 제38조 ·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같은 법 제49조, 제53조 부터 제56조까지 · 같은 법 제27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입목벌채 허가 2. 입목벌채 신고 3.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 4. 병해충 등의 예방·구제 5. 산림정화구역 내 시설의 설치 6. 임산물절취·불법입목벌채· 굴취·채취 등 단속 및 사법처리 7. 입목벌채신고 및 산림오염 방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산림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8. 불법산지전용(산지전용 허가지 외) 등 산지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 9. 포상금의 지급(불법신고자) 1.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2.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3.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허가 4. 사상자 보상금 지급 5. 입산허가 6. 방화 및 실화범 처벌 7.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5조 · 같은 법 제4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67조 · 「산림보호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 같은 법 제79조

[생태하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1. 공유수면 관리 2.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제거 허가 3. 접속토지의 수면 이하로의 굴착허가 4. 준설, 굴착허가 5. 인수 및 수주허가 6. 토석, 사력채취, 식물재배 및 벌채허가 7. 토석, 절개 등의 투기나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허가 8. 호안 방파제 등의 시설물 점용허가 9. 그 밖의 점용허가 10. 점용허가에 대한 고시 11.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질문 12.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9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0호, 제11호 • 같은 법 제8조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55조제1항 • 같은 법 제6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	1.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2.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감면 3.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4.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 승인 5.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6.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7. 허가기간 연장허가 8. 공사의 착공, 준공신고 처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8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처분에 관한 권한	1.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2. 효력의 정지처분, 원상회복, 손해방지 시설의 설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같은 법 제21조
4. 소하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2. 소하천의 점용 등 3. 허가의 제한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15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 2. 주민의견의 청취 3. 토지 등의 수용 4. 원상회복 의무 5.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6.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청문 7. 허가의 실효 8.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9. 점용료 등의 징수 10.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11.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12.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13. 소요공사비의 예치 14. 점용 등의 신고 15.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	·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6. 시유지 관리	1. 시유지 사용허가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2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7.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별표 3]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시민봉사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의 교부	· 같은 법 제6조의2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 같은 법 제6조의3
	4.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의 교부	· 같은 법 제6조의3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무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함
(별표 1 및 별표 2).
- 나. 인용 법령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함(별표 1 및 별표 2).
- 다.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별표 3).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양시장이 동 환 인

2026년 2월 13일

고양시 조례 제2988호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고양시 이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이하 "이스포츠 진흥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과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과몰입 예방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과몰입 예방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 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

□ 제안자: 송규근·안중돈·이해림 의원찬성의원: 조현숙 의원 등 4명)

□ 제안이유

- 고양시 이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이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시장이 조례를 근거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제5조).
- 마.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6조 및 제7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2월 13일

고양시 조례 제2989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유족: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천승아·김희섭 의원(찬성의원: 이철조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등 기증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특례 사항 규정 신설(별표 1).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2월 13일

고양시 조례 제2990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유족이 탑승하고 해당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동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천승아·김희섭 의원(찬성의원: 이철조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고양시청과 고양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등 기증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사항 규정 신설(제7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2월 13일

고양시 조례 제2991호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사회적 약자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를 말한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 돌봄 위탁, 장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라.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병원에서의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 진료 비용
2.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3.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시 장례 또는 화장비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2조제1호의 반려동물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진료비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는 고양시 내 동물병원 또는 시설을 이용한 후 진료비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지급 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 제안자: 손동숙·최성원·신현철 의원(찬성의원: 안중돈 의원 등 4명)

□ 제안이유

- 고양시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경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기본적인 돌봄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반려동물 건강권의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의 정서 안정과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비·돌봄 위탁·장묘 등 필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동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며, 반려동물 유기·방치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1조).

- 나.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비등,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제2조).
- 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반려동물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제3조).
- 라. 동물병원 진료비, 돌봄 위탁비, 장묘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자 함(제4조).
- 마. 지원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지급 방법 등 구체적 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함(제5조).
- 바. 타 법령·조례와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제6조).
- 사. 전출·사망·허위 청구 등 부정한 사례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제7조).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6년 2월 13일

고양시 훈령 제444호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후단 중 “출국 30일 전까지”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완료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사위원회의 소집

이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박 상 희
	팀 장 성 명	국제협력팀장 임 소 영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김 준 혁 (031-8075-2168)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대상 출장의 허가기한을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심사위원회 운영의 현실화와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속하는 국외출장의 허가신청 기한을 일반적인 국외출장과 동일한 출국 7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심의 완료 후 허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제5조제1항).
- 나.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삭제함(제5조제1항).
-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구분을 삭제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7조).

고양시 고시 제2026-48호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외 2개 노선)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5-313호(2025. 11. 7.)호로 실시계획 고시 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49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외 2개 노선) 사업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등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시점: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492번지
 - 종점: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50-3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외 2개 노선)사업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결정	대로	2	18	30	1571	대로1-10	대로3-49	경기도고시 제2006-5069호(06.5.11.)	
금회시행	대로	2	18	30	81	식사동 1492	식사동 1492	-	
결정	대로	3	48	25	5726	대로2557-11 관산동 711-5	식사동 1279	고양시고시 제2008-172호(08.10.31.)	
금회시행	대로	3	48	25	16	식사동 1150	식사동 150-3	-	
결정	대로	3	49	25~32	677	대로2-18 식사동 290-9	대로3-48 식사동 1150	고양시고시 제2008-172호(08.10.31.)	
금회시행	대로	3	49	25~32	677	대로2-18 식사동 290-9	대로3-48 식사동 1150	-	

※ 분할측량에 따른 사업 면적 변경 : (당초) 27,170㎡ (변경) 27,250.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고양시장(공사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변경):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1492	도	54,388	2,806	고양시					분할
	1492-6	도	2,806.2	2,806.2	고양시					
2	290-52	도	165	165	사회복지법인 **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의정부동)				
3	290-43	목	2,177	2,177	사회복지법인 **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의정부동)				
4	290-49	중	2,210	37	재단법인천주교 의정부교구유지재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9-6				분할
	290-66	중	37	37	재단법인천주교 의정부교구유지재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9-6				
5	290-42	대	3,650	130	사회복지법인 **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의정부동)				분할
	290-63	대	129	129	사회복지법인 **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의정부동)				
6	292-1	잡	928	8	김*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 20*동 19**호(주엽동, 강선마을)	지도농업협동 조합 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5(토당동) 등	근저당권	분할
	292-4	잡	8	8	김*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 20*동 19**호(주엽동, 강선마을)	지도농업협동 조합 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5(토당동) 등	근저당권	
7	290-50	도	9	9	사회복지법인 **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의정부동)				
8	292-2	도	236	233	김*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 20*동 19**호(주엽동, 강선마을)	근저당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5(토당동)	근저당권	분할
	292-5	도	231	231	김*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 20*동 19**호(주엽동, 강선마을)	근저당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5(토당동)	근저당권	
9	292	대	1,259	393	김*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 20*동 19**호(주엽동, 강선마을)	지도농업협동 조합 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5(토당동) 등	근저당권	분할
	292-3	대	397	397	김*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 20*동 19**호(주엽동, 강선마을)	지도농업협동 조합 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5(토당동) 등	근저당권	
10	290-1	장	621	581	진*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중곡동)	영등포농업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9(신길동)신대방삼거리역지점	근저당권	분할
	290-55	장	586	586	진*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중곡동)	영등포농업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9(신길동)신대방삼거리역지점	근저당권	
11	290-37	장	708	3	이*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길 49* 20*호(중산동)	주식회사신한 은행 등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일산역지점) 등	근저당권	분할
	290-60	장	4	4	이*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길 49* 20*호(중산동)	주식회사신한 은행 등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일산역지점) 등	근저당권	
12	290-40	도	128	115	진*환 외 3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8*-* 주공아파트 41*~2**	영등포농업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7-2(신대방삼거리역지점)	근저당권	분할
	290-62	도	116	116	진*환 외 3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8*-* 주공아파트 41*~2**	영등포농업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7-2(신대방삼거리역지점)	근저당권	
13	290-38	장	770	9	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 창천동삼성아파트 10*~7**				분할
	290-61	장	9	9	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 창천동삼성아파트 10*~7**				
14	290-39	대	490	490	최*환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12* 6**동 4**호(감이동,힐스테이트포웰시티)	원당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36(주교동)(식사지점)	근저당권	
15	291-1	대	328	224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분할
	291-4	대	222	222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6	288-87	대	1,306	706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분할
	288-133	대	706	706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순번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목	대장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7	288-74	장	3,925	881	유*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홍도로4**번길 4*, 30*호(성사동)	원당농업협동 조합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20(신원당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분할
	288-128	장	879	879	유*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홍도로4**번길 4*, 30*호(성사동)	원당농업협동 조합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20(신원당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18	288-84	대	1,233	1,138	김*미 외 2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 홍실아파트 3-12**				분할
	288-130	대	1,138	1,138	김*미 외 2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 홍실아파트 3-12**				
19	288-99	장	131	3	유*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홍도로4**번길 4*, 30*호(성사동)	원당농업협동 조합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20(신원당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분할
	288-135	장	3	3	유*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홍도로4**번길 4*, 30*호(성사동)	원당농업협동 조합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20(신원당지점)	지상권, 근저당권	
20	288-73	도	736	232	김*원 외 19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380-3* 세교빌라-1**				분할
	288-126	도	233	233	김*원 외 19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380-3* 세교빌라-1**				
21	288-59	잡	2,891	1,070	서*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타*로 4*, 2**동 7**호(식사동, 위시타일산자이)2단지	주식회사 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원당금융센터	근저당권	분할
	288-124	잡	1,081	1,081	서*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타*로 4*, 2**동 7**호(식사동, 위시타일산자이)2단지	주식회사 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원당금융센터	근저당권	
22	288-23	장	2,704	721	아시아신탁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티엔지타워)				분할
	288-109	장	708	708	아시아신탁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티엔지타워)				
23	288-33	잡	2,431	15	임*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타*로 4*, 4**동 21**호(식사동,위시타일산자이)4단지				분할
	288-122	잡	15	15	임*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타*로 4*, 4**동 21**호(식사동,위시타일산자이)4단지				
24	288-28	장	3,306	2,900	김*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97길 3*, 10*동 8**호(청담동,청담동양파라곤)				분할
	288-117	장	2,919	2,919	김*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97길 3*, 10*동 8**호(청담동,청담동양파라곤)				
25	288-27	잡	374	124	임*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타*로 4*, 4**동 21**호(식사동,위시타일산자이)4단지				분할
	288-115	잡	112	112	임*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타*로 4*, 4**동 21**호(식사동,위시타일산자이)4단지				
26	288-26	잡	373	97	정*영 외 1인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 80*동 1**호(와동동, 가람마을8단지 동문굿모닝힐)				분할
	288-113	잡	113	113	정*영 외 1인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 80*동 1**호(와동동, 가람마을8단지 동문굿모닝힐)				
27	288-102	잡	130	10	김*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 *동 51**호(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남동산단금 융센터지점)	근저당권	분할
	288-137	잡	10	10	김*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 *동 51**호(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남동산단금 융센터지점)	근저당권	
28	288-101	잡	835	751	김*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 *동 51**호(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남동산단금 융센터지점)	근저당권	분할
	288-136	잡	735	735	김*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 *동 51**호(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남동산단금 융센터지점)	근저당권	
29	288-25	장	1,982	1,833	주식회사 풍전비철	인천광역시 서구 사림로 48(경서동)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삼곡동지점)	근저당권	분할
	288-111	장	1,855	1,855	주식회사 풍전비철	인천광역시 서구 사림로 48(경서동)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삼곡동지점)	근저당권	
30	288-51	장	3,331	9	김*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 *동 51**호(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남동산단금 융센터지점)	근저당권	분할
	288-123	장	9	9	김*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 *동 51**호(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남동산단금 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순 번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목	대장	면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31	949-7	구	5,544	264	국	환경부				분할
	949-55	구	266	266	국	환경부				
32	281-4	잡	992	409	이*자 외 1인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10*, 30*동 4**호 (와동동, 가람마을3단지동문아파트)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분할
	281-10	잡	417	417	이*자 외 1인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10*, 30*동 4**호 (와동동, 가람마을3단지동문아파트)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33	281-3	대	1,936	560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티엔지타워)				분할
	281-8	대	561	561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티엔지타워)				
34	282-2	답	1,746	943	박*용 외 1인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 후곡마을 20*-70*				분할
	282-7	답	936	936	박*용 외 1인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 후곡마을 20*-70*				
35	1134	구	3,400	316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
	1134-10	구	316	316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1150-4	답	1,700	1,303	권*영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				분할
	1150-8	답	1,321	1,321	권*영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				
37	1150	대	330	303	권*영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				분할
	1150-7	대	307	307	권*영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				
38	1150-3	답	30	30	고양시					
39	1146	답	1,685	110	전주이씨효령대 군파삼백당종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286-16, 1동(식사동)				분할
	1146-3	답	110	110	전주이씨효령대 군파삼백당종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286-16, 1동(식사동)				
40	1146-2	답	28	28	고양시					
41	1145-2	답	29	29	고양시					
42	1136-1	도	1,561	22	고양시					분할
	1136-6	도	22	22	고양시					
43	290-53	목	73	73	사회복지법인 **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의정부동)				
44	290-44	종	1,299	207	재단법인천주교 의정부교구유지 재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9-6				분할
	290-64	종	206	206	재단법인천주교 의정부교구유지 재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9-6				
45	290-9	대	3,739	240	사회복지법인 **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의정부동)				분할
	290-56	대	239	239	사회복지법인 **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의정부동)				
46	290-48	도	61	20	사회복지법인 **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의정부동)				분할
	290-65	도	20	20	사회복지법인 **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의정부동)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순번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목	대장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7	968	도	1,260	18	국	국토교통부				분할
	968-1	도	19	19	국	국토교통부				
48	290-29	도	178	160	김*원 외 4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 창천동삼성아파트 10*-7**				분할
	290-58	도	161	161	김*원 외 4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 창천동삼성아파트 10*-7**				
49	290-19	대	814	275	이*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1*길 4*(상암동)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불광동지점)	근저당권	분할
	290-57	대	274	274	이*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1*길 4*(상암동)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불광동지점)	근저당권	
50	290-31	도	128	128	김*원 외 4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 창천동삼성아파트 10*-7**				
51	290-36	도	23	23	김*원 외 4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 창천동삼성아파트 10*-7**				
52	290-34	장	306	306	진*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8*- 주공아파트 41*-2**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7-2(신대방삼거리역지점)	근저당권	
53	290-41	도	209	209	김*원 외 3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 창천동삼성아파트 10*-7**				
54	290-30	대	814	209	이*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길 1*(증산동)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불광동지점)	근저당권	분할
	290-59	대	206	206	이*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길 1*(증산동)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불광동지점)	근저당권	
55	290-54	대	232	138	최*환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12*, 60* 40*호(감이동,힐스테이트포탈시티)	원당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36(주교동(식사지점))	근저당권	분할
	290-67	대	137	137	최*환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12*, 60* 40*호(감이동,힐스테이트포탈시티)	원당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36(주교동(식사지점))	근저당권	
56	288-86	대	1,290	221	최*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 올림픽신수 기차촌아파트 11*-40*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원당금융센터)	근저당권	분할
	288-132	대	221	221	최*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 올림픽신수 기차촌아파트 11*-40*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원당금융센터)	근저당권	
57	288-85	잡	1,383	8	최*열	서울특별시 강서구 둔촌동 662-* 신송타워주상복합 60*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원당금융센터)	근저당권	분할
	288-131	잡	8	8	최*열	서울특별시 강서구 둔촌동 662-* 신송타워주상복합 60*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원당금융센터)	근저당권	
58	288-29	장	3,026	35	시*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6* 20*동 90*호(성사동,래미안휴레스트)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충무로역지점)	근저당권	분할
	288-119	장	11	11	시*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6* 20*동 90*호(성사동,래미안휴레스트)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충무로역지점)	근저당권	
59	288-29	장	3,026	35	시*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6* 20*동 90*호(성사동,래미안휴레스트)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충무로역지점)	근저당권	분할
	288-120	장	24	24	시*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6* 20*동 90*호(성사동,래미안휴레스트)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충무로역지점)	근저당권	
60	288-31	장	2,249	1,162	주식회사 풍전비철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80-3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심곡동지점)	근저당권	분할
	288-121	장	1,197	1,197	주식회사 풍전비철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80-3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심곡동지점)	근저당권	
61	288-20	장	4,142	87	김*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1**, 20*동120*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수지만현지점) 등	근저당권	분할
	288-108	장	87	87	김*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1**, 20*동120*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수지만현지점) 등	근저당권	
62	281-7	도	58	2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티엔지타워)				분할
	281-12	도	1	1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티엔지타워)				
63	282-1	차	1,058	156	박*용 외 1인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 후곡마을 20*-70*				분할
	282-6	차	156	156	박*용 외 1인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 후곡마을 20*-70*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순 번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4	282-4	답	163	28	박*용 외 1인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 후곡마을 20*-70*				분할
	282-8	답	28	28	박*용 외 1인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 후곡마을 20*-70*				
65	1151-3	답	891	636	권*영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				분할
	1151-7	답	632	632	권*영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				
66	1151	대	878	364	권*영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				분할
	1151-6	대	360	360	권*영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				
67	1150-5	도	2,099	176	고양시					분할
	1150-9	도	177	177	고양시					
68	1151-4	대	112	58	고양시					분할
	1151-8	대	58	58	고양시					
69	1151-5	답	37	37	고양시					
70	1150-6	답	7	7	고양시					
소 계				27,250.2						

고양시 고시 제2026 - 5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386-40 등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2.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26, 124-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386-40	2026-02-13	2010-01-26	건달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26-1, 124-6, 126-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386-42	2026-02-13	2010-01-26	건달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6-52, 536-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229-51	2026-02-13	2010-01-26	장항-대화간 도로로 한 자석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2-5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57-9	2026-02-13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38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610-58	2026-02-13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8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77	2026-02-13	2018-05-25	대우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7						
8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64-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369번길 59-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369번길 59	2026-02-06	건물번호 착오변경으로 인한 변경신청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8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391번길 27-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391번길 27-36	2026-02-11	건물번호변경(분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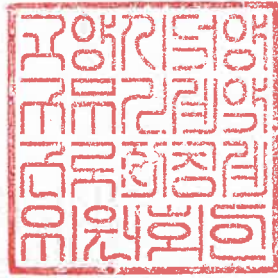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386-44	2026-02-09	건물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 멸실	문봉동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 - 127호

공 고

고양시 공인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인의 명칭	등록인영	공인의 명칭	폐기인영
고양시덕양구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인		고양시덕양구 무기계약근로자 징계위원회인	
고양시덕양구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고양시덕양구 무기계약근로자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2.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명칭 변경

3. 최초 사용일 및 폐기 연월일 : 2026. 2. 13.

4. 공고자 : 고양시 덕양구청장

2026. 2. 13.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